

---

#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

2017. 05. 24.



한강유역환경청

# 목 차

I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
II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8
III . 고시개정 행정예고	32

# I.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3항, 5항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 제61조(벌칙) 제4호의2 신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 ■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신설

-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 ■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신설

-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추가

-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신설

-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 현장수습조정관 :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화관법 규칙 제50조)

##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7호의2 신설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제6호의2 신설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 제59조(벌칙) 제10호의2, 제12호 신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 ■ 제61조(벌칙) 제4호의3 신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제62조(벌칙) 제4호 신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 ■ 제64조(과태료) 제1항제8호 추가, 제2항1호 신설

---

### 제6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12.27.>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12.27.>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

# II.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가.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제2조(화학물질확인)

-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 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수정

**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삭제 >~~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 다. 정보공개 소명서 접수 후 소집기한 연장 등

###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에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

## 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신설

### 제7조의2(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_\_\_\_ 2. \_\_\_\_ 3. \_\_\_\_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심의 대상 사업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내용에 휴식시간 추가

###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 [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200km 이상 (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수입 변경허가 기준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한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 변경허가(또는 신고) 기준
    - :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물질'(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여러 제품을 수입할 경우 등에서 변경신고 대상인지 불명확) →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물질'

## 사. 취급시설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 규칙 제21조의2 신설

###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고 인정한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 해당 취급시설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 마련: 규칙 제25조의2 신설

### 제25조의2(가동중지의 해제)

- ① 제25조제6항에 따라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조치가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자.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증가)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에만 해당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 5.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차.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

###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사항” 이란\_\_\_\_(현행과 같음)

## 카.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 ②항 신설

###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 다만, 종사자가(←종업원이) 10인 미만인 \_\_\_\_\_ 검할 수 있다.

####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 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 톤 미만인 경우: 1명
-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 톤 이상 만 톤 미만인 경우: 2명
-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 톤 이상 십만 톤 미만인 경우: 3명
-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 톤 이상 백만 톤 미만인 경우: 4명
-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 톤 이상인 경우: 5명

## 타.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 신설 등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환경부장관)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성의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③, ④ 환경부장관은\_\_\_\_ → ③, ④,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_\_\_\_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파.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등**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별표6의2와 같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가 화학사고를 \_\_\_\_\_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⑤ \_\_\_\_\_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6의3과**(←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시간
교육대상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		자격취득 전 32시간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 <b>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b>	<b>매 2년마다 8시간</b>
	2)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외	매 2년마다 16시간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8시간)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3) <b>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b>	매 2년마다 16시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1. 라목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중 8시간**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라목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대상자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8시간의 교육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8시간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 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가능 사항 규정

###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 ① (현행과 같음)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

###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① 법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에 따른 사항만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④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화학사고 발생시 유·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더.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방법 개선 등

###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러.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건 추가

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5. 장외영향평가서 및 \_\_\_\_\_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

## 머. 잔류법 관리대장 작성시 서류 기록·보존 의무 면제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 ①
- ②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버. 자료보호 신청 서류 제출대상 추가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 ①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_\_\_\_\_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_\_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서.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

### [별표 1]

28.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200km 이상(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 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할 것

## 어.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개정

### [별표 2] 제2호에 다목 신설

- 다. 비고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수출용으로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모델규칙」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

### [별표 3] 비고에 제3호, 제4호 신설

3. 공정 흐름도(PFD)가 없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별로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대신할 수 있다(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정배관계장도(P&ID)가 없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과 크기, 펌프 등 동력기계 등을 표시한 도면과 설비 사이의 간격과 배치를 알 수 있는 도면(설비배치도)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 [별표 5]

1. 가. 8) 건축물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1. 다. 2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비나 보수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별표 5]

2. 가. 4) 건축물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출입구와\_\_\_\_\_ 설치하여야 한다.
2. 가. 5)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2. 라. 7)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에는 저장설비 주위에 배수시설(트렌치 등), 집수시설, 안전장치(유출·누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면 방류벽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5. 다. 1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기준에 따라야 한다.( → 용기를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가) 차량 운행 중의 동요로 인하여 용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를 목재 · 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팔레트(견고한 상자 또는 틀) 내부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 외에는 1단으로 쌓을 것

다) 짐이 무너지거나 차량 충돌 등에 의한 용기 충격 및 밸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를 차량의 짐받이에 바싹댈 것

라) 로프, 짐을 조이는 공구 또는 그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묶어서 적재할 것. 다만, 나)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별표 5]

6. 나. 5)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시하여야 한다.

6. 나. 11)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외에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시하여야 한다.

배관의 외경(단위 mm)	배관의 두께(단위 mm)
114.3 미만	4.5
.....	.....
508.0 이상	9.5

[별표 5]

6. 마. 4) 비고

1.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제시하는 취급시설기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설 설치기준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에는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서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보수 작업, 시설 변경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커.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

현행 즉시신고 규정 4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즉시신고 3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로 행정처분 강화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 터.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 및 수량기준 설정

[별표 10]

(단위 : kg)

번호	사고대비물질명(CAS번호)	적용범위	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70	니켈카르보닐(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71	모노게르만(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2	사불화에틸렌(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3	삼불화붕소(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	1,000
74	삼염화붕소(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	1,000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6	브롬(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77	세렌화수소(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8	이소프렌(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0	20,000
79	1,1-이염화에틸렌(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0	헥사메틸디실록산(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1	펜타카르보닐철(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2	오불화브롬(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3	염화티오닐(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4	사염화티타늄(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5	클로로피크린(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6	비닐에틸테르(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0	20,000
87	모노실란(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88	디실란(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89	이염화실란(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90	삼염화실란(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1	메틸이염화실란(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2	메틸삼염화실란(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3	삼염화비닐실란(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4	삼염화에틸실란(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5	테트라메틸실란(75-7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6	사염화규소(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7	사불화규소(7783-61-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별표 10] 비고 제4호, 제5호 신설

4. 사고대비물질이 상시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최대용량이 보관·저장수량 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사용시설의 최대용량은 배관 등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시설의 최대용량을 말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수량기준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허. 별지 서식 변경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운반자 및 운반시간·**휴식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휴식시간은 별표1 제28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48호서식(도급신고서)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작업 사유서(긴급한 사유로 도급작업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부

## 부 칙 ( 추후 최종확인 필요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_\_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_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_\_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중 기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_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와 이 규칙 별표 10의 비고 4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된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안전성 평가 특례기준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운반차량의 종류 변경 및 운반차량의 수 또는 용량이 증가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연구실 검사제도 운영방안 개정

### ● 연구실 검사

- . 기존 :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모두 점검
- . 개정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개정(17.2.6).시행(17.5.7)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은 환경부 검사 제외  
단,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Pilot Plant)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예정)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 단,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정기점검 실시 내용

분야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해당없음
화공 안전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액용기 보관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화공안전 분야 위험 요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항목	화학물질 배관의 강도 및 두께 적절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색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배관 내 물질, 압력, 흐름방향, 등 표시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에 안전장치 설치여부(과압방지장치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배관, 부속품 등 부식방지조치 및 적정 재질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저장시설 또는 용기 등 파손, 부식, 균열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 해당 물질의 성질에 맞는 온도, 압력 등 유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가열·건조설비의 경우 간접가열구조 여부 (단,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안전한 장소설치, 화재방지설비 설치의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정전기제거 유효성 여부 (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습도 70%이상하는 방법, 공기 이온화하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피뢰침 설치 여부 (단, 취급시설 주위에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화기취급시설 8m이상 우회거리 확보 여부 (단,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 또는 저장설비의 연결부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1회/주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량기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누출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CCTV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배관 말단부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 조명등을 방폭형으로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멸스위치 출입구 밖 설치 유무 (스위치로 인해 화재·폭발우려가 있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출설비의 국소배기방식 여부 (단,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 된 경우, 건축물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 전역방식으로 설치해야 할 경우는 전역방식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출설비가 배풍기, 배출다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배출 가능한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재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소화설비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 중 비상시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구 비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긴급세척시설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II.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7.04.19 ~ 2017.05.10)

< 제6조의2 신설 >

제6조의2(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 규칙 별표 5 제2호(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라목 7)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한다.

1.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2.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3. 다수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건물 임대 등으로 임의 변경이 어려운 아파트형 건축물

< 제7조제2호 조건 추가 >

2. 규칙 별표 5 제3호(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은 실외 저장·보관 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7.04.19 ~ 2017.05.10)

제12조(법령별 상호인정) 신설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I. 옥내저장소의 기준)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1)항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I. 지하탱크저장소 기준)과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다목 6)항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Ⅲ. 이송취급소 기준 제5호 나목)과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항 나)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3)항 및 제2호 가목 2)항
  -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내화기준)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6)항 및 제2호 가목 11)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4.19 ~ 2017.05.10)

제2조의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의 규정”을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5)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배관의 두께)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5)항에 따른 배관의 두께는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4.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제3조의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의 규정”을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5)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예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마련 등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위임

##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제·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 목 적 ) ----- -----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으며, <b>&lt;신 설&gt;</b>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b>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b>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장구는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장구의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p>
<p>제6조(보호장구의 착용 및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1.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2.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 3. 유해화학물질이 밀폐 용기에 저장되어 이송, 하역·적재 및 보관 시 취급자가 흡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b>&lt;신 설&gt;</b></p>	<p><b>제6조(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①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에는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b> 1. ~ 7. (삭제)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노출이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밸브연결 안전장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소나 장비를 완전 밀폐하는 구조물 혹은 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경우 3.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p>

현행	제개정(안)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u>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00-0	전면형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	메틸하이드라진 (Methylhydrazine)	메틸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34-4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68	사린(O-Isopropylmethyl phosphonofluoridate)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7-44-8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1 형식(안전장갑과 안전화가 포함된 일체형)	
69	염화시안 (Cyanogenchloride)	염화시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6-77-4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1 형식(안전장갑과 안전화가 포함된 일체형)	

※ 전면형이나 반면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부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할 것

【별표 2】

작업상황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제2항 관련)

작업상황 ※ 기본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필요 없는 자동화 작업은 적용되지 않음	사고대비물질 분류*					
	A(14종)	B(5종)	C(6종)	D(12종)	E(21종)	F(11종)
① 개방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② 밀폐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기본	반면착용	기본	기본
③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④ 보수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기본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⑥ 시험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사고대비물질 분류

그룹명(호흡보호구 형태, 유해성 등급, 성상)	사고대비물질 번호
A(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높음·중간, 기상/액상) :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 2, 4, 37, 46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 :	1, 43, 49, 50, 55
C(방독마스크, 중간, 기상) :	7, 9, 11, 13, 42, 44
D(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높음, 액상) :	8, 10, 16, 18, 22, 24, 31, 34, 35, 40, 47, 54
E(방진·방독 겸용마스크, 중간·낮음, 고상/액상) :	20, 29 / 3, 5, 14, 15, 17, 19, 21, 23, 25, 26, 27, 28, 30, 32, 39, 45, 52, 58, 61
F(방진마스크, 낮음, 고상) :	33, 38, 41, 59, 60, 62, 63, 64, 65, 66, 67

- ※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시는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 ※ '**기본**'은 작업 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 ※ 보호복의 경우, 포스겐(12), 플루오르화수소(43), 플루오린(48), 아르신(51), 포스핀(53)의 탱크로리 상·하차 작업시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194호, 2016.9.30., 일부개정]

- [별표 2] 제한물질 중 고유번호 06-5-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 중 고유번호 06-5-6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8~1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부칙

[별표 2]의 고유번호 06-5-6의 노닐페놀[Nonylphenol ethoxylates; 68412-54-4, 37205-87-1, 26027-38-3, 127087-87-0] 제한내용 중 가목에 따른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의 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5.08 ~ 2017.05.29)

### 2.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23종)로 지정 : [별표 1] 유독물질(고유번호 [2017-1-773](#)란에서 [2017-1-795](#)란)을 신설
- 나. 고유번호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의 함량기준 25%에서 0.1%로 변경  
(최종 IARC보고서("16.12.22)를 반영(유해성분류(발암성 구분 1등급)추가)
-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 사 합 니 다